

군산시 공고 제2026-2214호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285회 임시회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로 상가가 개방주차장 지원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민간시설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전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목적(제1조):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 조문 정비
(제19조제15항 → 제19조제13항)
- 정의(제2조제6호): 개방주차장 지원대상인 ‘상가’의 정의 신설
- 정의(제2조제7호): 개방주차장 조성·운영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정의 신설
- 지원방식(제4조제1항): 개방주차장 지원방식을 시 직접 시행에서 관리주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

- 추가지원(제4조제2항): 개방기간 재연장 시 최초 지원금액의 50% 이내 추가지원
- 지원한도(제4조제3항): 보조금 지원기준을 최대 2,000만원 이내로 구체화
- 차등지원(제4조제4항): 개방면수 · 개방시간 · 시설 노후도 · 사업비 · 사업효과 등을 고려한 보조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 지원사업신청(제5조제1호): 지원사업 신청사항에 상가의 명칭 · 주소 등 기본사항 추가
- 현장조사(제6조):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요건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용 편의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 선정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
- 지원대상평가(제7조): 개방면수 · 개방시간 · 이용수요 · 접근성 · 주차난 해소효과 등 지원대상 평가기준 구체화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8조): 지원대상·우선순위, 보조금 규모, 사업 변경·취소 및 환수 등을 심의하는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위원회 구성 · 임기 · 회의소집 · 의결 및 서면심의 등 운영기준 마련
- 간사,서기 및 수당지급(제10조): 위원회 간사 · 서기 지정 및 위촉 위원 수당 · 여비 지급근거 마련
- 지원대상결정 및 협약(제11조): 심의 후 지원대상 · 보조금액 결정 및 협약 · 변경 · 취소 절차 정비
- 보조금의 교부(제12조): 협약 체결 후 보조금 교부 및 보조금 집행·관리 기준 마련
-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제13조): 정산·반환·환수및 강제징수등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지원 제한(제14조): 채납·협약위반·환수처분 등 지원 제한 및 예외지원 기준 마련
- 안내표지설치(제15조): 안내표지 설치주체를 시장에서 관리주체로 변경하고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설치방법 준용
- 경과조치(부칙 제2조): 종전 협약 및 시행·기 지원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6. 9. 18. ~ 10. 8.(20일간)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우편) 54076, 군산시 진포로 134 (군산시청), 스마트도시과

(전화) 063-454-3813 / (FAX) 063-454-6082

(전자우편) suni8126@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스마트도시과 교통시설계(063-454-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활성화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개방주차장”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6. "상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시장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보조금"이란 개방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요건)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상가를 말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것
2. 주간 또는 야간에 10면 이상의 주차장을 3년 이상 개방할 것. 단 상가는 20면 이상으로 한다.
3. 1일 10시간 이상 개방하고 1주일에 5일 이상을 개방할 것
4.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주차장으로 별도 표시가 가능할 것

③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지정 당시의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이용에 활용되는 구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바닥 포장
2. 개방주차장 내 주차편의시설 보수
3. 개방주차장 내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4. 개방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판, 위치안내표지판 등 설치
5. 개방주차장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6. 그 밖에 개방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방주차장의 개방 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장은 해당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최초 지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방주차장 1개소당 보조금 지원한도는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개방면수, 개방시간, 시설 노후도, 사업비, 사업효과 및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항의 지원한도 범위에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 및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의 명칭, 주소 등 기본사항
2. 부설주차장 전체 면수 및 개방주차장 면수
3. 개방 기간 및 시간
4. 지원신청 사업개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장 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의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대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개방주차장의 이용 편의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평가) ① 시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개방 가능 주차면수
2. 개방시간
3. 이용수요
4. 접근성
5. 주차난 해소 효과
6. 공공성 확보 수준
7. 유지관리 계획
8. 자부담 비율
9. 협약 이행 가능성

② 시장은 지원대상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의 공정성·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2. 보조금 지원규모의 적정성
3. 지원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4.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항만수산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2명 : 교통행정과장, 스마트도시과장
2. 위촉직

가. 건축·도시계획·회계·교통 등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

는 사람으로서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서기 및 수당지급)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방주차장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 결정 및 협약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와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운영, 지원사업의 시행 및 이행조건, 지원시설의 소유관계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지원신청서상의 사업개요 또는 개방주차장 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방주차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 ① 시장은 제11조의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

3. 사진대지

4. 정산서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산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개방주차장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⑥ 보조금의 반환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지원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3.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5.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안내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방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판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군산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 이용안내표지, 위치안내표지의 설치방법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주차장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지정된 개방시간을 지켜야 한다.
3.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4.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5.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6.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를 금한다.
7.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금한다.
8.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
9. 그 밖에 관리주체 또는 시장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고 보완·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시장의 보완·시정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시장은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지원사업의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및 해당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 및 운영점검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시설의 유지·보수는 종전의 규정 및 해당 협약에 따르고, 협약기간 종료 후 시설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지원사업의 사업비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및 해당 협약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

신청인 (관리주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설명 (공동주택명)		동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세대수	
주차면수	면	개방 주차면수	면	
개방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0년)			
개방시간	① 평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	
특이사항				
지 원 신 청 사 업 개 요				
사 업 내 용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계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사본 1부			
	4. 지방보조금 신청관련 서식 일체 1부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요건)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신청 규모 및 지원대상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량과 소요예산이 달라 조례 개정 시점에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교통항만수산국 스마트도시과장 김소영
연락처	(063) 454 - 4200